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형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임순묵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6년 11월 22일

나. 회부일자 : 2016년 11월 23일

3. 제안이유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법령 정비(안 제4조제2항)

나.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3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도록 변경하고 조문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 조례는 법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과 맞추기 위해 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일부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